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수기준 산정 협의 시 보수 균형을 고려사항으로 추가〉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34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
3. 회부연월일 : 2025.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토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02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법률 제7조(보급) ① ~ ③ (생략)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신설> <신설>	법률 제20802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법률 제7조(보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 -----. 1.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 2.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

-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획득 실적은 낮아져 획득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하여 적지 않은 과부족 인원이 발생하고 있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임.

[2024년도 군별 간부획득 현황]

(단위: 명)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대	계
계	계 획	12,949	3,227	3,177	1,148	20,501
	선 발	8,073	2,004	2,391	808	13,276
	과 부 족	-4,876	-1,223	-786	-340	-7,225
장 교	계 획	4,830	600	1,318	419	7,167
	선 발	4,514	568	1,108	256	6,446
	과 부 족	-316	-32	-210	-163	-721
부 사 관	계 획	8,119	2,627	1,859	729	13,334
	선 발	3,559	1,436	1,283	552	6,830
	과 부 족	-4,560	-1,191	-576	-177	-6,504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참고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현재 군인의 보수결정체계도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곤란성과 계급별·신분별·근속연수를 고려한 책임성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5년 3월 18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8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20802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¹⁾이 제7조제4항 및 제5항 등을 신설하였는데, 개정안은 이중 제7조제5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예정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실태조사는 미국의 QRMC(Quadrennial Review of Military Compensation)제도²⁾를 참조한 것입니다. 미국의 QRMC는 매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군인에 대한 보수 평가로서, 해당 제도는 군 복무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민간으로의 군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시행예정 개정법률은 최근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해 간부들의 사기 저하 및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 보수를 민간영역 수준과 비교하고 이를 고려하여 군 간부들의 보수를 정책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예정인 제7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의 실태조사는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의 계급별(장교·준사관·부사관·병)·직위별로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직급에 있는 근로자들과 각각 비교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1) 개정법률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907)이 제422회 임시회(2024년 2월)에서 수정가결된 것입니다.

2) 196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고 이를 통한 군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보수 균형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성과 시행예정 개정법률의 입법취지 및 시행전망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보수 결정 체계도
업무의 곤란성과 계급별·신분별·근속연수를 고려한 책임성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25년 3월 개정된 「군인보수법」이 '26년
3월 19일부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향후 군인 보수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부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6788-5304